#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04.08.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3.31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9.04.02.
다. 상정일자 :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9.04.08)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소 삼 섭 청소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『마포지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(2009.2.14)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타 자치구가 중구 및 용산구에서 종로구 및 서대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 조성 대상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"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납부하는 금액" 으로 함(안 제2조제1호)

**3. 검토보고** (김건재 전문위원)

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4일 체결된「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」에 종로구 및 서대문구가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, 동 협약서에 의한 지원금과 구 발전기금을 마포구에 부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기금조성 관련 대상 자치구를 추가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**5. 토론요지** : 없 음

**6. 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**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** : 없음

**8. 기 타** : 없음